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4.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내용과 상위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내용이 상치하는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것임

□ 주요골자

ㅇ 의사정족수

- 심의회 개의를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을 과반수로

ㅇ 조직(위원)

- 당연직인 도의 국장 7인을 4인으로
- 경제공업및 경영학자와 공업기술자 각 1인을 포함한 4인이내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산업경제인 4인으로

ㅇ 기능

- 국토이용계획 입안.자문에 관한사항을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및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으로

ㅇ 명칭변경

- 도시과를 지역계획과로 도시과장을 지역계획과장으로

□ 첨부

1.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발췌문 1부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본문중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및 건설도시국장" 을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국장 및 건설도시국장" 으로 하고 동항 제3호 "경제공업 및 경영학자와 공업기술자 각 1인을 포함한 4인이내" 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산업경제인 4인이내" 로 하며 제4호는 이를 삭제 한다

제4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및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중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6조 본문중 "도 심의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를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로 하고 "의장" 을 "회장" 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도시과장"을 "지역계획과장" 으로 "도시과"를 "지역계획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조직) ① - ② (생략)	제2조(조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및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이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은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경제공업 및 경영학자와 공업기술자 각 1인을 포함한 4인이내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산업경제인 4인 이내
4.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4 (삭제)
제4조(기능) (생략)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토이용계획 입안(변경입안 포함) 자문에 관한 사항	5.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6조(의사정족수) 도 심의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의사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 ---------- ---------- 회장이 -------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과 지역계획계장이 된다.	② ---- 지역계획과장 ---------- 지역계획과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

제 8조 (의사 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 (도 심의회)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는 회장 1인과 다음의 1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1. 도의 국장 4인 이내
2. 도내의 건설관계 지방관서의 장 3인 이내
3.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자 5인 이내
4.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산업경제인 4인 이내

【국토이용관리법】

제30조의2 (권한위임) ①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8조 (권한의 위임) ② 도지사가 권한 위임사항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